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58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박균택·한준호·박홍배

박희승 • 민형배 • 한민수

박상혁 • 안도걸 • 주철현

허 영•박지원•김현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기부를 통해 정부나 기업이 직접 관여할 수 없거나 지원이 미비한 분야에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특수관계인을 통한 지배력 확대나 편법적 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식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주식의 배당금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배당률이 매우 낮아 배당금만으로는 공익 목적 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의무지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기업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신 공익법인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한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문화의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함과 함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받겠다는 뜻(이하 "권리조정"이라 한다)을 회사의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제안할 수 있다.

- 1. 「상법」 제360조의3제1항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승인
- 2. 「상법」 제37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영업양도 등의 승인
- 3. 「상법」 제385조제1항 및 제415조에 의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 4. 「상법」 제433조제1항에 의한 정관의 변경
- 5. 「상법」 제522조제1항에 의한 합병의 승인
- 6. 「상법」 제530조의3제2항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조정을 하겠

다는 뜻

- 2. 권리조정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하 "권리조정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수(단,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과 합하여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권리조정 대상주식에 적용되는 이익의 배당(「상법」 제462조제1 항의 한도에 따른다)에 관한 내용. 다만, 권리조정 대상주식 1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은 보통주식 1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회사는 해당 권리조정 대상주식에 대한 권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그 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권리조정에 대한 규정이었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제3항의 의안에 관한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하고, 이러한 결의 시 해당 공익법인은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결의가 가결되면 해당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4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따른 결의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본다.

- ⑥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조정을 제안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제안은 철회할수 없다. 다만, 공익법인이 양도 등의 사유로 권리조정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 및 제4항에 따른 결의는 효력을 잃는다.
- ⑦ 제1항에 따른 제안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의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4항의 중요한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⑧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의 명칭, 권리조정이 이루어지는 주식의 수, 이익의 배당에 관한 내용을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위 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1조의2(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0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함과 함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받겠다는 뜻(이하 "권리조정"이라한다)을 회사의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제안할 수 있다. 1. 「상법」 제360조의3제1항에의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승인 2. 「상법」 제374조제1항 각호에 의한 영업양도 등의 승인 3. 「상법」 제385조제1항 및 제415조에 의한 이사 및 감사

- 4. 「상법」 제433조제1항에 의

 한 정관의 변경
- 5. 「상법」 제522조제1항에 의 한 합병의 승인
- 6. 「상법」 제530조의3제2항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조정 을 하겠다는 뜻
- 2. 권리조정의 대상이 되는 주 식(이하 "권리조정 대상주식" 이라 한다)의 수(단,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과 합하여 그 회사의 발행주 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 지 못한다)
- 3. 권리조정 대상주식에 적용되는 이익의 배당(「상법」 제4 62조제1항의 한도에 따른다) 에 관한 내용. 다만, 권리조정 대상주식 1주에 대한 이익배

당액은 보통주식 1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회사는 해당 권리조정 대상주식에 대한 권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그 의안의 주요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정관에 권리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의 의안에 관한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고, 이러한 결의 시 해당 공익법인은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의가 가결되면 해당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4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따른 결의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제1항각 호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본다.

- ⑥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조정을 제안한 경우 이러 한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제 안은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공 익법인이 양도 등의 사유로 권 리조정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 안 및 제4항에 따른 결의는 효 력을 잃는다.
- ① 제1항에 따른 제안 또는 제 4항에 따른 결의는 해당 주식 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⑧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의 명칭, 권리조정이 이루어지는 주식의수, 이익의 배당에 관한 내용을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위 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